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일, 이철규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는 1988년부터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비경제탄광의 정비대책을 담은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발표·추진하여 왔음.

지난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함에 따라,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가 폐광된 이후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 공식적으로 조기 폐광되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석탄 등 광물을 생산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부의 희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되,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업과 광부의 헌신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광업 시책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기념일 중 광업을 조명하고 그 종사자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기념일은 없으므로 광부의 날은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는 점, ② 농업, 임업, 수산업의 경우에는 각각 농업인의 날, 임업인의 날, 수산인의 날을 정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③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Miners' day)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광산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고 광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